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98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08월 0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고병국, 오한아, 여 명,
최 선, 이동현, 김정태, 이광호,
김화숙, 강동길, 오현정, 우형찬,
홍성룡, 김제리, 장인홍, 봉양순,
김소양, 김상진, 이경선, 이영실,
김기덕, 김춘례, 서윤기, 전석기,
장상기, 임종국 의원 (26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(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, 폭력 등)에 노출되어 있음.
- 복지현장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.
-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.

2 주요내용

-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5호).
-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5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| 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</u></p> <p><u>6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|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처우개선 등 사업)제1항제5호를 신설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관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 - 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)제1항제5호의 신설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